

2018년 제조업 클린사업 우선지원 선정기준

선 정 항 목	항목별 가중치	비 고
■ 공통적용 항목	65점	
① 최초 보조지원 사업장	15점	
② 지역별 재해다발 위험업종(소업종의 재해율)	15점	- 재해율순위로 10개 소업종 단위로 그룹화 하여 1점씩 차감 - 재해율 통계 : 지역별 50인 미만 제조업 2017년도 11월 확정통계 사용 - 기타산업의 경우 해당 재해율이 유사한 제조업의 가중치 적용
③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	10점	근로자수는 ERP 통계 적용
④ 장년근로자(만55세 이상), 장애인, 외국인 등 취약계층 근로자 고용 사업장(근로자 1명당 2점) 위 사항에 해당될 경우 4대 사회보험 가입자명부, 장애인등록증 사본(개인정보 삭제)	10점	- 장년근로자, 외국인근로자 : 4대 사회보험 가입자명부 산재보험 가입 근로자의 주민(외국인) 등록번호로 확인 * 장년근로자(63년생 까지), 외국인등록번호(5, 6) - 장애인 : 장애인등록증 - 비정규직은 변동이 많아 적용하지 않음
⑤ 크레인(정격하중 2톤이상), 지게차(좌·입식) 해당설비 사진제출(크레인 정격하중 확인가능 사진) 시 인정	5점	- 사진첨부 시 인정(크레인 정격하중 확인가능 사진) - 현장확인 시 허위일 경우 대상선정 취소
⑥ 2017~18년도 고용노동부 감독·점검 사업장 위 사항에 해당될 경우 관련서류 제출 시 인정	10점	관련서류 - 시정지시서, 과태료고지서 등
■ 자율활동 우수항목	15점	
⑦ 이사장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우수기업 선정 또는 포상 등을 받은 사업장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하는 노사문화대상, 강소기업 인정, 일학습병행제 인정서 제출 시 인정	10점	-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하는 노사문화대상, 강소기업인정, 일학습병행제(인정유효기간 내) 등 우수인정사업장 - 인정서 및 대상명단을 확인할 수 있을 경우 인정 * '17~18년도 공생협력 참여업체의 협력업체중 기술지원 사업장
⑧ 2017~18년도 위험성평가 사업주교육 또는 산재예방요율제 교육 이수사업장	5점	안전보건공단 전산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기준 가중치 부여 (서류 제출 필요없음)
■ 지역특성을 고려한 자율 항목	20점	
⑨ 2017~18년도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	10점	안전보건공단 전산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기준 가중치 부여 (서류 제출 필요없음)
⑩ 2017년도 작업환경측정 실시사업장	5점	
⑪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교육이수 사업장	5점	
계	100점	

※ 선정기준 점수가 동일할 경우 공통항목 순번→자율항목 순으로 항목별 우선순위 적용하고 그럼에도 점수가 동일할 경우 사업주 연령이 높은 사업장을 선정함.